# 캠퍼스시설이용규정

2005.6. 10 제정2010. 12. 14 개정2012.4. 10 개정2014. 6. 11 개정2016.6. 8 개정2022. 7. 1 개정2023.7. 27 개정2024. 12. 4 개정

- 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덕성여자 대학교(종로캠퍼스 포함. 이하 "캠퍼스"라 함)내 캠퍼스시설(이하 "캠퍼스시설"이라 함)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6.6.8, 2023.7.27., 2024.12.4.>
- 제 2조(용어의 정의) 캠퍼스시설이라 함은 덕성여자대학교 내의 옥내외 모든 공간과 설비(기계, 기구, 기자재 포함)를 의미한다.
- 제 3조(적용범위) 캠퍼스시설 이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- 제 4조(이용원칙) 캠퍼스시설은 학문공동체로서의 자유로운 학구적 분위기를 유지하고,구성원의 안전과 통행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 5조(허가업무의 관장) 이 규정에서 정하는 허가업무의 주관부서는 사무처(총무과) [종로캠퍼스 캠퍼스시설에 대해서는 "평생교육원"] 로 한다.<개정 2023.7.27., 2024.12.4>
- 제 6조(캠퍼스시설 이용허가) 캠퍼스시설을 이용하는 행사, 집회, 행위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- 1. 교육, 연구 및 관련시설 부근에서 스피커를 사용하는 등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2. 잔디나 수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3. 취사, 음주, 장터의 개설 또는 주류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
  - 4. 외부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
  - 5. 야간에 행사나 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
  - 6. 캠퍼스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<신설 2010.12.14>
  - 7. 기타 행사 시 지역사회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<신설 2010.12.14>
- 제 7조(원상복구 등) 이용자는 집회 및 행사 등의 목적으로 캠퍼스시설을 이용한 후에

는 청소, 정리 정돈을 통하여 이용 이전의 상태로 복원(반납)하여야 한다.

- 제 8조(임시가설물 설치 등) ① 캠퍼스 내에 임시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- ② 현수막, 포스터 등은 지정된 장소(고정 게시판 또는 현수막걸이용 철제빔)에 주관자의 실명을 표시하여 게시하되, 통행에 지장이 없고 기존 캠퍼스시설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.
  - ③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 현수막, 포스터 등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- ④ 모든 임시가설물의 설치기간 또는 현수막, 포스터 등의 게시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. 다만, 사전에 게시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제 9조(불법주차 및 과속 운행 금지) ① 캠퍼스 내에서 불법주차와 과속운행은 금지한다.
  - ② 운행 시 과도한 소음 또는 매연을 발생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학내 운행을 제한 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0조(허가절차) ① 캠퍼스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늦어도 이용일 6일(근무일 기준. 이하 같음) 전까지 해당 부서에 접수시켜야 한다.
  - 1. 교원 및 교원단체 : 교무처(교무과)
  - 2. 학생 및 학생단체 : 학생·인재개발처(학생지원과)<개정 2022.7.1.>
  - 3. 직원, 직원단체 및 외부 단체 : 사무처(총무과) [종로캠퍼스 캠퍼스시설에 대해 서는 "평생교육원"] <개정 2023.7.27., 2024.12.4.>
  - 4. 대학홍보와 관련된 단체 : 입학처, 대외홍보실 <신설 2010.12.14., 개정 2016.6.8, 2022.7.1.>
  - 5.국제협력과 관련된 단체: 국제처(국제교류과) <신설 2010.12.14, 개정 2022.7.1.>
  - ② 신청서를 접수한 부서는 캠퍼스시설 이용 허가 시 이용과정이나 행위가 학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의견을 붙여 이를 사무처(총무과) [종로캠퍼스 캠퍼스시설에 대해서는 "평생교육원"] 에 이송한다.<개정 2023.7.27... 2024.12.4>
  - ③ 사무처(총무과) [종로캠퍼스 캠퍼스시설에 대해서는 "평생교육원"] 는 교육, 수업, 연구 또는 행정 업무에 미칠 영향을 참작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접수부서로 이관한다.<개정 2023.7.27., 2024.12.4.>
  - ④ 해당 접수부서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위반사항) 대학은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 설치된 임시가설물 또는 플래카드, 포스터 등을 철거할 수 있다. 이 경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 또는 게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- 제12조(이용료) ① 외부인의 캠퍼스시설 이용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한다. <개정 2016.6.8, 2023.7.27.>
  - ② 쌍문캠퍼스 캠퍼스시설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고, 종로캠퍼스 캠퍼스시설 이용료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, 다음 각호를 적용하여 이용료를 부과한다.<개정 2023.7.27., 2024.12.4.>

- 1. 교내 부서에서 주최하는 공식행사나 본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.
- 2. 본 대학교와 협력기관인 단체 또는 지역사회 주민이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최대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 단, 거스히딩크 재단이나 장 애인단체의 풋살구장 이용시에는 시설우선 배정 및 이용료를 면제한다. <개정 2010.12.14, 2014.6.11., 2016.6.8>
- 3. 본 대학교 교수가 정규 회원인 학술단체가 장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료 50%를 할인한다. 다만, 본 대학교 교수가 5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학술대 회 또는 전국규모의 학회주관 국내학술대회를 유치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한 다.<2016.6.8>
- 4. 캠퍼스시설 이용료 기준은 1일 4시간을 기준으로하고,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.
- 5. 운영요원이 필요한 영상, 음향기기를 사용할 때는 소정의 사용료를 추가 부과 한다.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.<개정 2010.12.14>
- 6. 하절기, 동절기 냉난방 가동 시 또는 야간에 조명 요청 시 소정의 사용료를 추가 부과한다.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.<개정 2010.12.14>
- 7. 운동장(영근터, 소영근터 포함)은 학내 구성원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지역사회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협력기관인 단체 또는 지역사회 주민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.<신설 2010.12.14>
- 8. 주차장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장애인이 본교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 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.<신설 2016.6.8.>
- 9. 종로캠퍼스의 경우, 정부기관 및 기타 비영리단체의 캠퍼스시설 임대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최대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24.12.4.>
- ③ 본 대학교 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홍보 목적의 캠퍼스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.<신설 2010.12.14>
- 제13조(권한의 위임) 총장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- 제14조(시행에 필요한 사항) 총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(제12조 제1항 2호, 5호내 지6호 제12조 제2항 및 별표1개정, 제6조 6호내지7호, 제10조 4호내지5호 및 제12조 제1항 7호 신설)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(별표1 개정)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6월 11일 부터 시행한다.(제12조 제1항 및 별표1 개정)

## 부 칙<2016. 6. 8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8일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<2022. 7. 1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<2023. 7. 27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27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24. 12. 4>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4일 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쌍문캠퍼스 캠퍼스시설 이용료 기준<개정 2010.12.14, 2012.4.10, 2014.6.11, 2016.6.8, 2023.7.27., 2024.12.4.>

	수용 인원		기본사용료/ 4시간	추가사용료			
장 소 명		산정기준		영상 및 음향기기 사용료	냉난방 및 조명 사용료		
대강당 (학생회관112호)	480명	-	700.000원				
L동303호 소강당	340명	-	600,000원				
대강의동 (201호~204호)	230명	-	500,000원		- 90인 이상에 원별 안사로 100,000원부도) - 학생에 한해 명별 안사로 100,000원부도) - 학생 발도 약 등 학료부도 약 등 100,000원제 함 무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		
대강의동 (101호~108호)	110명	-	200,000원				
차미리사기념관 119호	120명	-	300,000원				
차미리사기념관 426호	96명	-	300,000원				
차미리사기념관 세미나실	20명	-	80,000원				
운 동 장	-	100명 이하	500,000원				
		100명 초과	기준인원 비례산정				
영 근 터	-	100명 이하	1,000,000원				
		100명 초과	기준인원 비례산정	50,000원			
소 영 근 터	-	100명 이하	500,000원				
		100명 초과	기준인원 비례산정				
테니스장	-	2면	100,000원				
		4면	200,000원				
풋살구장	-	기준 50명 이하	200,000원				
		50명 초과	기준인원 비례산정		2,200,000원, 종 일일 경우 4,400,000원(부 가세포함)으로		
덕우당 안채(숙실1,2,3)	-	24시간(3인 기준), 1인초과시 20,000원 추가	100,000원		승인		
덕성·하나 누리관 체육관	-	1일(8시간) 기준 체육관 이외의 시설은 대관하지 않음	3,000,000원				
덕성 아트홀	412명	1일(4시간) 기준	1,500,000원				
기타 장소 - 상기사용료에 준하여 적용							

# [별표 2] 종로캠퍼스 캠퍼스시설 이용료 기준<개정 2023.7.27., 2024.12.4.>

<VAT별도>

장 소		수 <del>용</del> 인원	산정기준	기본사용료/ 4시간	전일사용료/ 8시간 <sup>1)</sup>	냉난방, 전기 및 부대시설사용료
강의실(소)	50m² 미만	20명 이하	-	120,000원	220,000원	기본사용시 80,000원, 전일사용시 140,000원
강의실(중)	50㎡ 이상 100㎡ 미만	40명 이하	-	200,000원	360,000원	
강의실(대)	100m² 이상 200m² 미만	80명 이하	-	300,000원	540,000원	
강당	200㎡ 이상	ı	100명 이하	500,000원	900,000원	
			100명 초과	700,000원	1,250,000원	
^h-1	외부			시간당 1,000,000원		
양관	내외부			시간당 1,500,000원		-
기타장소			상기 사용료에 준하여 평생교육원장이별도로 정함			

<sup>1)</sup> 전일사용료는 반일사용료\*1.8 수준으로 책정함